

◎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428호

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'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체결 시공기술'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07월 28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	법인명(성명)	동부엔지니어링(주)(김완석)		
	주 소	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		
	전화번호	02-2122-2795	팩스번호	02-2122-6830
신청인	법인명(성명)	(주)대도엔텍(장정수)		
	주 소	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43, 2층		
	전화번호	031-919-9524	팩스번호	031-919-9526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738호
- 명 칭 :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체결 시공기술
- 기술분야 : 토목 / 수자원 / 보
- 내용요약
이 신기술은 고무보 폭방향(수심방향)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하여 폭방향과 길이방향에 격자형으로 보강포를 배치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고무보의 고무본체와 고무보 보호커버 통합체결 고정구조를 갖는 개량형 고무보의 시공기술이다.
- 신기술의 범위
고무보 폭방향(수심방향)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의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통합체결 고정구조를 갖는 개량형 고무보 시공기술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가. 보호기간 : 2014.8.6. ~ 2026.8.5.(12년)

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
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

술.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